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2469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2. 16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최송이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4.05.08.가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8. 18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주택도시 보증공사 (임차권자 정문일 승계인)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2021.09.01.-	229,000,000		2021.09.01.	2021.08.03.		
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권자	2021.09.01.~ 2023.08.31.	229,000,000		2021.09.01.	2021.08.03.	2025.5.22.	
<p><비고></p> <p>주택도시보증공사 (임차권자 정문일 승계인):신청채권자임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승계인임.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 <p>2025.09.01.자로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,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겠다는 확약서가 제출됨.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2469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32-2
숲속하우스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4길 15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 지붕
5층 도시형생활주택(단지형 8세대)
1층 12.15㎡
2층 114.37㎡
3층 114.37㎡
4층 114.37㎡
5층 114.37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5층502호
철근콘크리트구조 60.1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32-2
대 235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. 235분의 34.37

감정평가액 226,000,000
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1.13	226,000,000	22,600,000
2회	2026.02.24	158,200,000	15,820,000
3회	2026.04.07	110,740,000	11,074,000
4회	2026.05.19	77,518,000	7,751,800

2025.09.01.자로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
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, 임차권등
기 말소에 동의하겠다는 확약서가 제출됨.